

# [ 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대출은 녹취기록 또는 전자적 서명방식을 통해 신청되었으며, 이는 일반 서명을 대체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유사한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

-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② 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되며(변액특별계정 대출은 D+2일 지급), ③ 보험기간 동안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④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⑤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도 단리적용으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대출 관련 민원사례

### Q1.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코피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3. 대출이자율 부분 확인]

### Q2. 대출이용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부분 확인]

### Q3.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 등 비용 부담 부분 확인]

##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계약을 해지 하여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상이하니, 해당 조항의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즉시 변제 부분 확인]

## ■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if.co.kr](http://www.cardif.co.kr)) 또는 고객센터(TEL. 1688-1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TEL. 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수수료 등 비용 부담

대출금액과 이자 외에 대출약정 체결 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입니다.

### ■ 인지세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금융소비자의 권리

###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
-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의 신용상태(개인신용평점, 재산상황 등)와 무관하게 고객님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액 부리이율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가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므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 다. 위법계약해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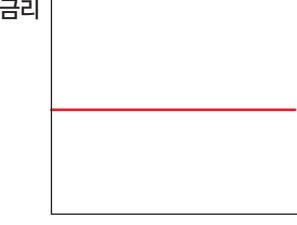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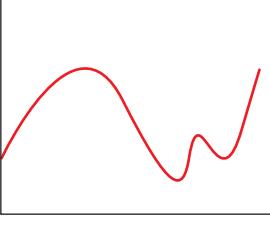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라.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험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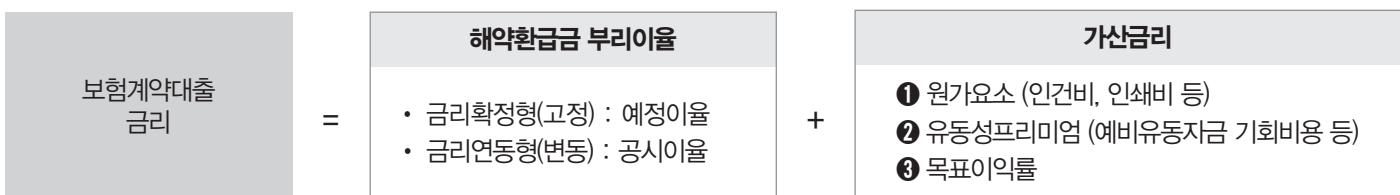
### 3 대출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에 따라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금리확정형(고정금리)	금리연동형(변동금리)
운용형태	금리  기간	금리  기간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가입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시
내용	보험계약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변동주기(통상 1년)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대출금리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예정이율) + 가산금리(1.5%)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공시이율) + 가산금리(1.5%)

####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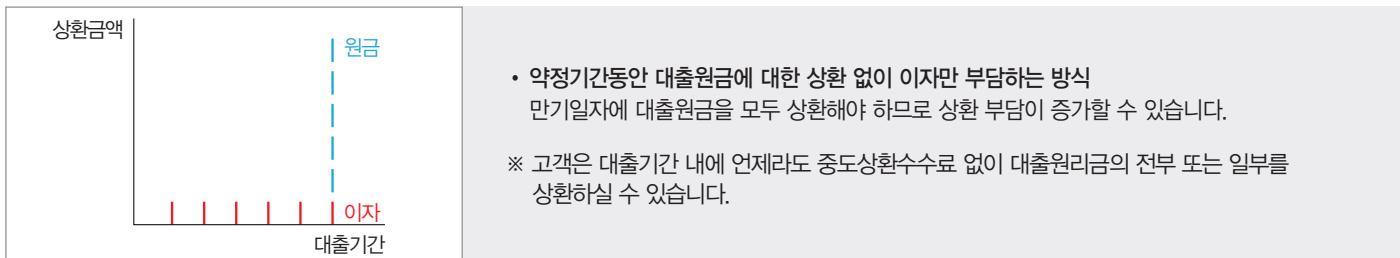
- 대출금리는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과 가산금리로 산정됩니다.



-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은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리확정형(고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변동)은 공시이율을 의미합니다.
  - 예정이율** : 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 상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방법서」에 따라 해약환급금 계산 시 적용하기로 미리 약정한 이율(고정)
  - 공시이율** :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 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
- 가산금리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 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요소** : 업무원가(인건비 · 인쇄비 · 전산처리비 등),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유동성프리미엄** : 보험계약대출을 위한 예비유동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등
  - 목표이익률** :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

### 4 대출 상환 방법

■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 ■ 상환금액 · 이자율 · 시기

-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천만원을 5%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만기일시상환	11,000,000원	1회 ~ 23회 : 41,666원(이자만 납부) 24회 : 10,041,666원

-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부일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리적용 하여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5 즉시 변제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합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시점*	내용
① 시점 무관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② '02. 8. 1. 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③ '02. 8. 1. ~ '05. 3. 31.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④ '05. 4. 1. 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해당 시점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 기준

- 상기 ②~③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

## 6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까지입니다.**
-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계약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 7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 기타 유의사항

###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연체이자율 및 그밖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리적용하여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권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고객센터(TEL. 1688-1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if.co.kr](http://www.cardif.co.kr))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TEL. 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